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36 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정춘생·이해민·차규근

강경숙 · 김준형 · 서왕진

황운하 · 신장식 · 김선민
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·도지사협의체, 시·도의회의 의장협의체, 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체 및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,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 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·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82조 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의장은"을 "의장 등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시 · 도의회의 여성의원
- 6. 시 · 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8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	제18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		
협의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	협의체) ①		
이나 지방의회의 <u>의장은</u> 상호	<u>의장 등은</u>		
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,			
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			
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			
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			
수 있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.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		
<u><신 설></u>	6. 시・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		
	<u>성의원</u>	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		